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41

발의연월일: 2025. 3. 21.

발 의 자: 박덕흠 · 서천호 · 김예지

구자근・강승규・고동진

김선교 · 성일종 · 박정하

조지연 의원(10인)

제안이유

헌법 제121조에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임대차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일부만 임대차를 허용하고 있어 농업을 규모화시키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탈법·불법적인 행위로 실경작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21년 LH 사태로 이후 일률적으로 강화된 농지취득 규제는 농지 거래를 위축시키고 은퇴·고령농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농지 취득·소유와 임대차 관련 규정을 농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농촌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하여 조례로 지정하는 구역은 주말체 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취득 허용(안 제6조제2항제3 호)
-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른 농촌구조전 환우선지역은 비농업인의 예외적인 농지취득 허용(안 제6조제2항제 9호의3)
- 다. 상속과 이농자의 농지 소유 상한 폐지(안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 라.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농지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 목적 계획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의무 면제(안 제8조제2항)
- 마.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항목 간소화(안 제8조제2항제2호).
- 바. 주말체험영농 목적, 전용·영농여건불리지역 농지 취득 시 농지위 원회 심의 생략 허용(안 제8조제3항)
- 사. 상속・이농 농지 소유 상한 폐지 및 농촌구조전환우선 지역 농지 취득에 따른 농지 처분 규정 개정(안 제10조제1항제4호의2・제4호의3 및 제5호의2 등)
- 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농지 임대차 허용(안 제23조제1항제1호)
- 자. 농지 임대차ㆍ사용대차 허용 의무 자경 지간 3년으로 통일하고,

농지소유자 연령·재촌 등 일정 요건은 삭제(안 제23조제1항제4호 등).

- 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농지도 전대 허용(안 제23조제1항 제5호)
- 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임대할 수 있는 경우 추가(안 제23조제1 항제7호다목 및 라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3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농지"를 "농지(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48조에 따른 농지 관리 실천계획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지정한 지구 안의 농지는 제외한다)"로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른 농촌구 조전환우선지역 안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농지 소유 상한)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조제2항제2호·제7호·제9호·제9호의2"를 "제6조제2항제2호·제7호·제9호·제9호의2·제9호의 3"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방안"을 "방안(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ㆍ제9호의3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 대해서는 농지위원 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중 "제23조제1항제6호"를 각각 "제23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제5호의3 및 제5호의4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6조제2항제9호의3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 터 1년 이내에 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 지 아니하거나 해당 농지가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이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자기의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제9호까지·제9호의2"를 "제9호까지·제9호의2 · 제9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를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3년 이상"으로,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농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을 "3년"으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을 "농지 또는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농지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의2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가목 중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를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 하여"를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지

라. 제6조제2항제9호의3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청 하여 접수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기간을 연장·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생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현행과
략)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②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	3
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	
의 <u>농지</u> 를 소유하는 경우	<u>농지(시장·군수 또는 자</u>
	치구구청장이 제48조에 따른
	농지 관리 실천계획이나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을 수립
	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지
	정한 지구 안의 농지는 제외
	<u>한다)</u>
4. ~ 9의2. (생 략)	4. ~ 9의2. (현행과 같음)
<u> <신 설></u>	9의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른
	<u>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안의</u>
	<u>농지를 소유하는 경우</u>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 상속으 제7조(농지 소유 상한) 제6조제2 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 다.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 유할 수 있다.
- 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 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 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 ④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 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 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 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 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 속 소유할 수 있다.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③ • ④ (현행과 같음)

항제3호에 따라 주말ㆍ체험영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 | 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 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 적으로 한다.

- ①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 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 는 시 · 구 · 읍 · 면의 장에게 발 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 6조제2항제2호·제7호·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 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 체험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 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 1. (생략)
-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 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 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 의 확보 방안

3. • 4.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u>
6조제 2 항제 2 호 · 제 7 호 · 제 9 호
·제9호의2·제9호의3
1. (현행과 같음)
2
<u>방안(주말·체험영농</u>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3. • 4. (현행과 같음)

③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 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 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 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제44조 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 신설>

④ ~ ⑦ (생 략)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 지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그 사유가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3)
<u>다만,</u> 제6조제2항제
2호·제3호·제7호·제9호·제
<u>9호의2ㆍ제9호의3 또는 제10호</u>
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 대해서는 농지위원회 심의
를 생략할 수 있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
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4의2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	제23조제1항
<u>제6호</u> 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제7호
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	
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	
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의3.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4의3
농지를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	
대하거나 <u>제23조제1항제6호</u> 에	<u>제23조제1항제7호</u>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	
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5의2. 제6조제2항제9호의3에 따

5의2. · 5의3. (생략)

6. • 7. (생략)

② (생 략)

-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 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 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제6조제2항제1호·제4호부터 | 1.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 는 경우
 - 2. · 3. (생략)
 - 4.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 4.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3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

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3조 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지 아니하거 나 해당 농지가 농촌구조전환 우선지역이 아니하게 된 후 3 개월이 지난 경우(자기의 농 업경영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 5의3. 5의4. (현행 제5호의2 및 제5호의3과 같음)
- 6. · 7.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대차) ① -----

-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9호 의3 -----
 - 2. · 3. (현행과 같음)
 - 년 이상 -----

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 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 <u>이 5년이 넘은 농지</u>를 임대하 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 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ㆍ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 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 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 (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 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의2. (생략)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 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 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 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 우

<u>0 1</u>
5
<u> 3년</u>
<u>농지 또는 제6조제2</u>
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소유한 농지를
<u>6</u> . (현행 제5호의2와 같음)
<u><</u> 삭 제>
7

우

-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제7조제2항 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신 설>

<신 설>

8. • 9. (생략)

② (생 략)

가
제6조
제2항제4호에 따라
나
제6조제2항
제5호에 따라
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
이 3년 이상 소유하고 있
<u>는 농지</u>
라. 제6조제2항제9호의3에 따
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u> 농지</u>
8.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